

창원지방법원 2023. 4. 28 선고 2022가단11821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3. 4. 7.

판 결 선 고 2023. 4. 28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D 사이에 2022. 6. 28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D에게 창원지방법원 등기와 2022. 6. 29. 접수 제268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
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D은 원고의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여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카드론 등을 이용하였으나 2022. 6. 24.부터 그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였고, 현재 원고에 대하여 53,792,261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,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2 지분(이하 '이 사건 지분'이라고 한다)을 소유하고 있었는데, 2022. 6. 28.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증여(이하 '이 사건 증여'라고 한다)하였고,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'이 사건 등기'라고 한다)를 마쳐준 사실, D은 2022. 12. 1. 창원지방법원 2022하단10959, 2022하면10959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D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,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,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박규도

별지